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글. 김광수
대한상사중재원
수석위원



최근 중재제도의 현황

전통적으로 개인과 기업은 경제행위로 인한 다툼이 당사자 간의 화해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헌법상의 청구권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에 따라 분쟁을 최종 해결한다. 그러나 소액 재판과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재판청구권을 제한 받기도 한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도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송 일변도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민사조정법을 개정하고 다시 2010년에는 상임조정위원제도와 지역별 조정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연계 조정업무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소송이외의 분쟁해결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은 중재, 조정, 알선 등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ADR 중에서도 중재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이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최근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는 1966년 3월 중재법이 제정되고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전신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재제도가 출범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무역업자와 관련한 알선 위주의 클레임 해결업무와 외환통제시절 외국에 무역거래 수수료와 클레임액 송금을 위한 외국환 추천업무¹⁾에서 점차적으로 중재업무로 전환하였다. 본고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거래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 알선의 기능, 그 사례와 개인, 기업 및 법률전문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자취와 현황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발족하여 1970년 3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고 1980년 8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기능으로는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해결(중재, 조정, 알선),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상담, 클레임예방설명회) 및 중재에 관한 국제협력, 조사연구, 계몽홍보 업무가 있다. 특

1) 외환통제시절에 위약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해약금 등을 해외의 거래선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추천을 받아야만 했음

2) 중재기관은 아니며 서울글로벌타워 내에서 중재심리 및 세미나 공간 등을 제공함

수업무로는 남북상사중재 사무처리와 투자분쟁모니터링 업무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업무의 법적 근거는 중재법, 대외무역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과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연간 중재를 400여 건, 알선은 1,000여 건 그리고 상담은 15,000여 건 정도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중재사건은 1996년에 100건, 2002년에 200건, 2007년에 300건을 돌파한 이래 2012년에는 360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8월 20일 법무부로부터 공익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은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²⁾의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 기능을 잘 활용하면 중재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록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중재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는 물론 외국중재기관의 국제중재심리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알선 및 상담 현황 (단위: 건)

구분 \ 기간	2012년	2011년	2010년
중재	360	323	316
알선	938	915	801
상담	11,989	11,339	8,645
총계	13,287	12,577	9,762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적인 중재기관의 구비요건으로는 ① 중재기관이 속한 국가의 중재법이 국제성을 갖추어야 하고 중재기관의 규칙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 ② 중재기관이 풍부한 국제사건의 처리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③ 국제중재를 전담할 분야별 중재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④ 중재인들이 양질의 판정을 내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중재인 보수가 적정해야 한다. ⑤ 중재이용업체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⑥ 중재사무국 직원의 국제사건 처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등이 있다.

위의 기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유엔의 중재법과 중재규칙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자로 국제규칙과 국내규칙을 이원화 개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0년 기준 세계에서 7번째로 국제중재사건을 많이 접수한 기관이다.³⁾

대한상사중재원의 2013년 12월 현재 총 중재인은 1,061명(외국인 110명 포함)으로 법조계 496명, 실업계 228명, 학계 232명, 공공단체 82명, 변리사 등 기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제중재인은 240명으로 법조계 161명, 실업계 17명, 학계 43명, 공공단체 19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18명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중재인 선임, 기피, 교체, 해임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일반국민이 이용하는 소액사건의 경비 부담 완화 차원에



서울 국제중재센터에서 활동하게 될 대한상사중재원과 주요 국제중재기관

3) 미국중재협회 888건, 프랑스국제상업회의소 793건(국내사건 포함),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418건, 런던국제중재법원 237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140건, 스톡홀름국제상업회의소 140건, 대한상사중재원 52건, 비엔나국제중재센터 37건, 북경중재위원회 32건, 일본상사중재협회 26건, 홍콩국제중재센터 16건(임의중재를 포함하면 175건)

서 2007년부터 중재비용을 인하였기 때문에 중재신청금액 2억 원 이하 사건의 중재인 수당은 여타의 국제중재기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3년에 걸쳐 심리실과 사무실의 구조를 개선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2010년에 52명의 대형 심리실을 확보했으며 2011년에는 사무국, 중재준비실 및 중소형 심리실을 리모델링했고 2012년에 부산지부 사무실과 심리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중재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무리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고 2007년부터 매년 외국 중재기관과 관련 외국대학교에 연수를 보내 중재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사례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 합의(중재합의) 하에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절차의 전제조건은 중재합의이다.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분쟁에 대한 중재합의가 없다면 중재신청은 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인 알선에 의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는 별도의 문서 또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 중재조항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다.

국문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1명/3명] 중재지[도시/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언어]

영문중재조항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도

국내 중재판정 사례

2005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신청인은 준공 후 피신청인 측이 공사 잔대금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8천만 원과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급을 바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주장한 공사 잔대금 지급 신청과 지연이자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금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리고 중재비용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켰다. 이 중재 사건은 85일 만에 처리가 되어 양 당사자 측의 분쟁해결 경비를 절감시키고 시간을 절약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국제 중재판정 사례

2010년 한국 서울의 K사는 중국의 N사로부터 톤당 575달러, 총 1,725,000달러에 페로실리콘 3,000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N사는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계약물품을 선적하지 않았고, 이에 K사는 동 제품을 N사 측과 계약한 금액 보다 아주 비싼 가격으로 대만에서 대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K사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N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N사는 중국 지방정부의 전력 통제에 따라 계약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 부족으로 생산이 불가하여 생산할 수 없어 선적을 불이행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으로 한국 측의 클레임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한국의 K사는 계약서에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고 중재판정부로부터 승소판정을 받아 미화 50만 불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례의 경우 중국기업과의 분쟁을 서울에서 판정을 받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판단된다.



국제중재심리실 전경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비용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중재비용은 다르게 산출된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중재비용은 관리비용, 중재인수장과 중재경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제중재는 신청요금 백만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중재판정문에서 부담자와 분담비율을 정해주나 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2억 원 이하의 사건은 정부에서 4십만 원을 지원해 준다. 중재신청금액이 아무리 크다 해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의 중재비용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국내 및 국제중재 요금표

신청금액	국내중재	국제중재
1천만 원	4만 5천 원	4만 5천 원
1억 원	4십 5만 원	7십 5만 원
2억 원	8십 5만 원	1백 4십 5만 원
1십억 원	1천 3백만 원	2천 5백 5십만 원
2십억 원	2천만 원	3천 6백 8십만 원
5십억 원	4천 5십만 원	8천 5백 5십만 원
1백억 원	5천 6백만 원	8천 9백 5십만 원
5백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9천 4백만 원
1천억 원	1억 9천 3백 5십만 원	2억 4천 1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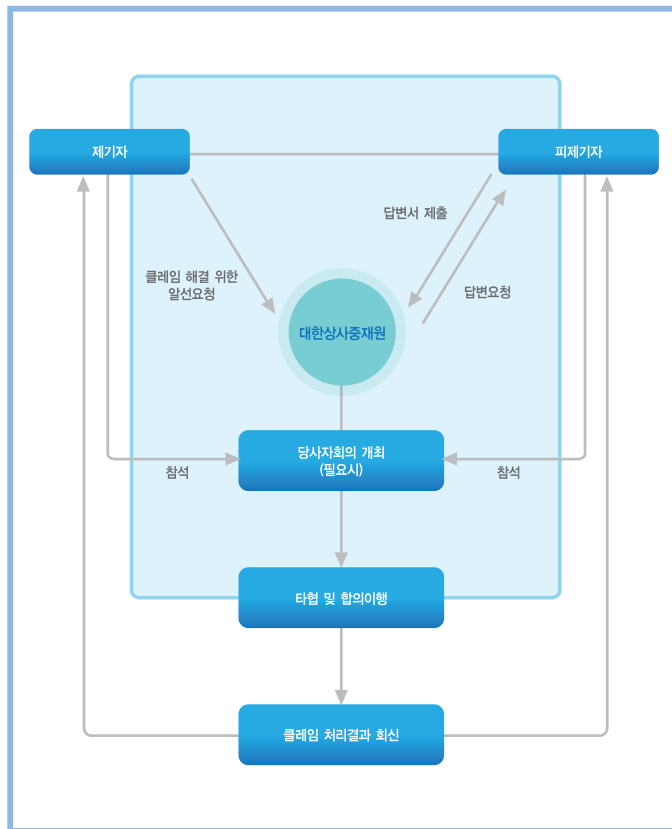
4)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 센터에서는 전문위원들이 알선업무 이외에도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 지도, 분쟁해결 방법안내 등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내방, 전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업무와 사례

알선(Intermediation)⁴⁾이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 직원이 분쟁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장을 무료로 교환하게 하여 상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시켜주는 무로서비스제도이다. 알선은 대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알선의 효력은 양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알선의 참여와 결과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제알선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알선에 불응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추궁된다. 알선은 ① 국내알선 : 국내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해결 비율이 평균 60% 내외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해결된다. ② 대내알선 : 외국 당사자가 국내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으로, 해결 비율은 50% 내외로 2개월 내 해결된다. ③ 대외알선 : 국내 당사자가 외국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으로, 해결비율은 30% 내외로 다소 낮지만 중소기업인들의 분쟁해결을 3개월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알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국제 또는 국내 분쟁의 해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① 물품거래 : 물품(용역)대금청구, 물품하자배상청구, 납품이행청구, 인수거절 배상청구 ② 대리점거래 : 커미션청구, 독점대리점 계약위반배상청구 ③ 운송거래 : 운송지연손실청구, 운송물품손상배상청구, 적하보험금

청구 ④ 투자거래 : 이익배당청구, 투자지분
정산청구, 합작(기술)투자계약위반 ⑤ 산업
재산 : 산업재산 소유권(사용권) 양도금(사용
료) 청구, 산업재산권침해배상청구 ⑥ 건설용
역 : 설계변경 추가공사비청구, 공사지연 지
체상금청구, 공사기성고(편집자 주 : 공사 과
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 확인정산청구,
공사하자수리이행청구 ⑦ 부동산거래 : 공장
상가 주택 등의 분양, 매매, 임대차 계약위반
청구 ⑧ 기타 국내 국제 상거래분쟁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절차도

국내 알선 사례

2012년 가맹점 을은 본사인 갑과 아이스
크림 판매 부대상품 가맹점 계약을 체결
했다. 을은 약 2개월간 영업을 하던 중
동일 상권 내에 다른 가맹점이 개설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본 사건을
접수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양 당사자를
모이놓고 회의를 개최하여 갑이 을의 제
품을 전부 회수하고 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선을 마무리 했다.

국제 알선 사례

2011년 한국 경기도의 A사는 중국 북경
의 B사로부터 파스타 제조기계 300개
를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통관 시 식약
청 검사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
입을 할 수 없어 수출자인 중국 측에 클
레이를 제기했으나 B사 측은 한국 측에
서 통관 시 필요한 검사항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검사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
측의 클레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 사건을 접수한 대한상사중
재원은 중국 측이 물품대금의 60%인 미
화 8,000달러를 한국 측에 지급하는 조
건으로 알선을 마무리 했다.

상사중재 및 알선제도의 활용 방안

개인과 기업이 상사중재제도를 활용하려면 우선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설정하는 계약체결단계, 중재심리단계, 중재판정단계 및 중재판정 후 야기될 수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소송과 강제집행에 해당되는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잘 이해하면 중재제도 이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① 기업체는 상대방과 계약협상을 할 때 무엇보다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작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라는 선택적 중재조항은 무효이다. 그리고 국제계약에서는 중재지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한국 중재법의 국제성, 중재기관의 풍부한 국제사건 처리 경험 등을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② 중재합의는 소극적, 적극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소금지와 중재로 해결해야만 하는 법적효력이 있다. 만일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1차 변론일 까지 중재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면 즉 방소항변(편집자 주: 원고가 제기한 소(訴)에 대하여 부적법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본안(本案)의 변론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의 소송법상의 권리)을 하면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게 된다. ③ 한국 중재법에는 중재인 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중재인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하게 된다. 중재 당사자들은 기관중재인 경우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위촉 관리되고 있는 중재인단의 중재인을 활용할 수는 있다. ④ 중재의 대리는 변호사 또는 중재판정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그 대리를 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법원 또는 중재로 다시 다룰 수 없다. ⑥ 중재판정 후 패소자는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자는 패소자가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최근 중재는 일부 학자들이 ADR에서 제외할 정도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발전할 가능성과 시장은 매우 넓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 이외에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 중재전문대학원 혹은 중재실무연구원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우선 대학 차원에서 기업통상, 협상 및 상사중재를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여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과 통상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